

I.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1998년 8월 28일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.

□ 제안이유

- 조세수입의 원활을 기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의 일환으로
- 성실납세자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성실납세자에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를 증명하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차량에 부착토록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임.
-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검토의견

- 파주시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, 이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어 급변 개정코자하는 주차요금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적법 타당하며
-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로 자궁심 고취와 건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로 보아 적정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스스로를 성실납세자로 판단하고 있는 주민정서에 비취볼 때 성실납세자의 판단기준 설정이 관건이 될것으로 보아지며 파주세무서의 경우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자로 한정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5명뿐으로 시혜의 정도가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.